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

- 민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조속 개정 추진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2.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 :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이만희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부)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민간) 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협회 회장, 동극건설 대표이사,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T/C 조종사 등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장우철 (044-201-3504)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태훈 (044-201-3507)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효석 (044-201-4597) |
|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우정훈 (044-201-3538) |
| | | 담당자 | 서기관 | 홍 철 (044-201-4990) |
|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 책임자 | 팀 장 | 조숙현 (044-201-3518)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원 (044-201-3541) |
|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책임자 | 팀 장 | 이윤우 (044-201-3573) |
| | | 담당자 | 사무관 | 전 진 (044-201-3574) |
|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책임자 | 과 장 | 유혜령 (044-201-3364) |
| | | 담당자 | 사무관 | 민경철 (044-201-4897) |
| | 법무부 공공형사과 | 책임자 | 과 장 | 박규형 (02-2110-3531) |
| | | 담당자 | 검 사 | 남상오 (02-2110-3533) |
|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책임자 | 과 장 | 김병수 (044-202-7432) |
| | | 담당자 | 서기관 | 어일천 (044-202-7344) |
|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동희 (044-202-7404)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훈 (044-202-7419) |
|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이상임 (044-202-7157) |
| | | 담당자 | 서기관 | 이재인 (044-202-7145) |
| |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책임자 | 총 경 | 임경우 (02-3150-2068) |
| | | 담당자 | 경 정 | 이영태 (02-3150-1144) |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세부내용

<< 후속대책 요약 >>

① 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엄정한
법 집행

국토부 **부당금품 수수 등 상시점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검찰·경찰청 **특별단속·수사**

고용부 **집중 점검·감독**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실질적 처벌근거 마련을 통한 **제재 강화**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현장 **영상기록체계** 구축 시범사업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선

외국인력 규제 합리화

②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불법하도급
단속처벌 강화

단속력 강화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감리 역할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제재 강화**

임금체불 방지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공공 1억↑, 민간 50억↑)

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단계적 의무화**('24.下 ~)

근로계약 개선

형식적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근로계약 관행 개선** 시범사업

1. 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① 범 정부 합동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월 200~300개)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특별점검(3.15~4.14)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 26건은 청문 등 **자격정지 처분절차** 착수, 경미한 사안 등 18건은 경고조치 절차 착수 등

○ 경찰청은 6.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배후까지 철저 수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

*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관련 총 749명 송치(구속 91) (5.8 기준)

○ 고용노동부는 **채용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을 추진('23.5~6월)한다.

*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12건 부과(1.8억원), 사전통지 4건 진행(60백만원) (5.8 기준)

○ 또한, 국토교통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23.5~8월)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과도한 월레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 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신설된다.

< 주요 법령 개정 내용 및 계획(2.21 대책 후속) >

| 법안명 | 주요 내용 | 추진계획 |
|---------|---|--------------|
| 건설산업기본법 | •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 '23.5.11일 발의 |
| 건설기계관리법 | • ¹⁾ 공사방해, ²⁾ 금품요구수수, ³⁾ 운송거부 처벌 근거 * 1), 2)는 既 발의('22.11, '23.1), 3) 발의 예정 | '23.5.11일 발의 |
| 채용절차법 | • 채용강요 제재수준 강화(과태료 → 형벌) | '23.5월 발의 |

-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어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안전운영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사고 발생시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조정(수직, 수평, 회전 작동), 인양물 하중, 풍속, 영상 정보 등 기록 가능

** (사례) OO건설사는 소관 건설현장 T/C에 작업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 아울러, 건설 초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현장 영상기록장치 개선방안 >

| 현 재 | 개 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상 건축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 의무화 • 일부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영상 기록체계 구축·관리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기록 의무 강화* 및 원격 모니터링체계 구축 * (기록 의무) 건축단계별 → 초 과정 * (기록 제출) 주기적 → 상시 모니터링 |

- 국토교통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LH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가 개선되며 조종사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합법적 보상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 그간 타워크레인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서로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23.12)

<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선방안(계속) >

| 구분 | 현 재 | 개 선 |
|-------|---|---|
| 근로 시간 | 관행적 주 52시간+ α 근무 | 주 52시간 준수 |
| 가동 시간 | T/C 당 조종사 1인 기준 (現 표준계약서 : 일 8시간, 월 200시간) | T/C 당 추가 조종사 채용 고려(1.2인 등) (例 : 일 10시간, 월 250시간 등 탄력 적용) |

<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선방안(계속) >

| 구분 | 현 재 | 개 선 |
|--------|--|------------------------------|
| 임금 | 월레비, OT비 등 관행 지급 | 월레비 등을 추가 조종사 채용에 활용 |
| 비용 부담 | 원청(장비임대료+ 조종사임금) + 하청(월레비, 52h초과 OT비) | 원청(장비임대료+ 조종사임금) |
| 작업지시체계 | 작업지시체계 불분명 | 임대사-원청-하청 간 명확한 작업지시체계 정립 |

- 건설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력 고용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하여 재입국시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소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된다.**(현장 적용, '23.6)

2.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① 단속·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 그간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미흡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는 인식 하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및 감리 역할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 **특별사법경찰**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 범죄 >

| 법안명 | 수사 대상 범죄 |
|---------|---|
| 건설산업기본법 | 불법하도급, 공사 입찰방해, 건설업 등록위반, 부정청탁, 시평조작,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신설} , 부당금품 수수 ^{신설} , 공사방해 ^{신설} 등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Eng 부실조사·등록위반, 감리·감독 명령 위반, 품질·안전규정 위반, 감리위반, 기술보호 위반, 점검방해 등 |
| 건설기계관리법 | 기계 등록위반, 부정 기계검사, 무단개조, 시정명령 불이행, 면허위반, 건설기계 이용 공사방해, ^{신설}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신설} , 운송거부 ^{신설} 등 |

-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적발률 제고 및 처벌강화를 통해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커지도록 전환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 이를 위해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건설공제조합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 (원리) 키스콘에 통보된 공사대장 정보와 공제조합의 보증서 정보 간 비교·검증 등
 - 의심사례 추출에 퇴직공제, 대금지급시스템 정보 등을 추가 활용하고, 불법하도급 분석 유형도 기존 일괄, 단단계 하도급 유형에서 무자격 하도급 등의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시스템 기능 강화, '23.9)
 - 또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주체별 관리의무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금년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 * (주요내용)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부실시공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②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

-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 도입한다.
 - * 전자카드제 도입('20.11~), 대금지급시스템 도입('19.6~)
 -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24.1월부터 공공공사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공공공사에 의무화 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3.5)하고,
 -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도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30% → 50%, '23.6).

<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방안 >

| 구분 | 현 재 | 개 선 |
|---------|---|---|
| 전자카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 중(일정규모 이상) * 공공공사 : 50억 이상 민간공사 : 100억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 대상 확대(’24.1~) * 공공공사 : 1억 이상 민간공사 : 50억 이상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既완료 |
| 대금지급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등의 전자적 직불 시스템을 공공공사는 전면 의무화, 민간공사는 활용 유도 중* * (인센티브)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30%), 상호협력평가 가점(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공사도 단계적 의무화 * ’24.下 300억 이상 ’25.下 100억 이상 ’26.下 50억 이상 ** 연구용역 통해 추가 확대방안 마련(’24.上)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공사 보증료 감면 확대(30%→50%) |
| 연계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소속 발주기관만 양 시스템 연계 시범사업* 중 * LH 사업장 위주로 193개 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사) 1억 이상 공사 연계 의무화 (민간공사) 단계적 연계 의무화 * ’24.下 300억 이상 ’25.下 100억 이상 ’26.下 50억 이상 |

-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투명화함으로써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되고,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건설 근로자)은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되었으나,
 -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LH 시범사업 추진, ’23.下)
- 특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임금 직접지급 기능이 강화되며 임금체불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제도 개선방안 >

| 현 재 | 개 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사 - 팀장 간 도급계약 관행 지속(과거 십장제) * 일부 현장은 팀장에게 노무비 등 전액 지급 → 팀장 재량 하 인건비, 식대, 숙박비 등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사-팀장 / 하도급사-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임금체불 방지 등 가능 |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부서 |
|---|--------------------------|--------|---|
| 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 | | |
| 1. 국토부, 검찰·경찰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 | | | |
| ①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집중단속 | | | 국토부 건설산업과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경찰청 공공범죄수사와 등 |
| 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 |
| ①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법령 개정 * '23.2.21 대책 후속조치 | 건설산업법, 건설기계법 개정안 등 발의 | '23.5~ | 국토부 건설정책과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등 |
| ② 건설현장 영상기록체계 구축 | LH 시범사업 추진 | '23.下 | 국토부 건설안전과 |
| ③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 LH 시범사업 추진 | '23.5 | 국토부 건설산업과 |
| ④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편 | 표준임대차 계약서 마련 | '23.12 | 국토부 건설산업과 |
| ⑤ 외국인력 규제 합리화 | 외국인정책위원회 의결 결과 현장 적용 | '23.6 |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
|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 | | |
| 1. 단속·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 | | |
| ①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 '23.5 |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토부 건설정책과 |
| ② 불법하도급 관리의무 및 처벌강화 * '21.8 대책 및 '22.3 대책 후속조치 | 건설산업법 개정안 등 발의 | '23.6 | 국토부 공정건설팀 |
| ③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 조기포착 기능 강화 등 | '23.9 | 국토부 공정건설팀 |
| ④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 강화 | 주택법 개정 | '23.7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 2.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 | | | |
| ① 전자카드제 +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확대 | 건설산업법 개정안 발의 | '23.5 | 국토부 공정건설팀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 ② 투명한 개별 근로계약 체결 확대 | LH 시범사업 추진 | '23.下 | 국토부 건설정책과 |

붙임 3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 법안명 | 주요 내용 | 소관 | 현황 |
|-------------|---|-----|-----------------------------------|
| 건설산업 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하도급 관리의무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 | 국토부 | '23.6월 발의 예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규정* 및 신고포상제 도입 * 부당금품 수수,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공사방해 등 | 국토부 | '23.5.11일 발의 |
| 건설기계 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를 이용한 1)공사방해, 2)부당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경우, 3)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시 제재 | 국토부 | 1), 2)는 既발의 3)은 5.11일 발의 |
| 사법경찰 직무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불법하도급, 등록위반, 채용 및 장비강요^{신설}, 공사방해^{신설} 등 **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안전규정 위반, 감리감독 위반, 건설 Eng 부실조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기계 등록위반, 무단개조, 운송거부^{신설}, 부당금품 수수^{신설} 등 | 법무부 | '23.5.11일 발의 |
| 채용 절차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강요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과태료 → 형벌) | 고용부 | '23.5월 발의 예정 |
| 노동 조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他노조 및 근로자, 사용자의 권리 침해, 2)대체근로 및 사업장 점거 등 제도개편 근거 마련 | 고용부 | 1)은 既발의 2)는 '23.8월 발의 예정 |

□ **대금지급시스템**

- 건설사의 대금 유용을 원천 방지하고, 발주자가 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를 구현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19.6)

* (공공)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철도공단체불e제로, 강원대금알림e 등 (민간) 노무비닷컴, 이콘 등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흐름도 >



□ **청구 과정**

- ① (하도급사) 하도급사는 ❶자신의 몫(경비, 이윤 등), ❷자신이 지급해야 할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대금청구서*를 원도급사에게 전송

* 건설근로자별·자재·장비업자별로 내역을 정리한 대금청구서(성명·상호, 계좌번호, 금액 등)

- ② (원도급사) 원도급사는 ❶하도급사 청구내역(하도급대금), ❷자신의 몫, ❸자신이 지급해야 할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전송

□ **지급 과정**

- ③ (발주자) 발주자는 청구된 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전체 금액을 원도급사의 약정계좌로 지급
- ④ (원도급사) 원도급사의 약정계좌로 들어온 대금은 원도급사의 지급 승인에 따라 각 대금의 계좌로 배분
- ⑤ (하도급사) 하도급사의 약정계좌로 들어온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사의 지급 승인에 따라 각 대금의 계좌로 배분

□ **건설현장 피해사례 실태조사 개요**

- ▶ (주관/참여)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2개 협회·연합회
- ▶ (조사기간) '22.12.30~'23.1.13일
- ▶ (피해현황) 1,494곳 현장 / 총 2,070건의 불법행위(월레비 강요 1,215 건, 노조전임비 강요 567 건)
- ▶ (피해액) 118개社 제출(입증자료 보유), 최근 3년 동안 총 1,686억원

□ **월레비 강요**

- (대상인원) 한 번이라도 월레비를 받은 인원은 438명
- (월레비 총합) 438명이 수수한 금액의 총합은 243억원(평균 55.6백만원), 438명 중 최대 수수액은 217백만원
- (월 최대 수수액) 28.3백만원, 상위 30명 평균은 16.7백만원

□ **노조 전임비 강요**

① 전임비 수수자

- (대상인원) 한 번이라도 전임비를 받은 인원은 556명
- (총 수수액) 556명 수수 금액 총합은 약 72억원(1인당 평균 13.0백만원)
- (월 평균 수수액) 월 140만원, 최대 수수자는 1,700만원

② 일정기간 2개 이상 현장에서 중복 수수자*(소위 일 안하는 팀반장)

* 동일 기간 2개 이상에서 중복 수수자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 취지에 불부합

- (대상인원) 일정기간 복수 현장에서 수수자는 총 36명
 - 이 중 3개 이상의 현장에서 수수자는 13명
- (현장 수*) 평균 2.5개 현장, 동일기간 최대 10개 현장
- (총 수수액) 36명이 수수한 금액의 총합은 9.2억원, 최대 수수액은 8.6천만원, 1인당 평균 2.0천만원
- (월 평균 총 수수액) 월 260만원, 최대 수수자는 810만원
- (중복 수수 기간) 평균 6.6개월, 최대 21개월간